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3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과표의 심의를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과표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인 이내로 함.(안 제14조의2 제2항)
- 나. 위원의 자격은 구의 5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함(안 제14조의2 제2항)
- 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 제3항)
- 라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은 사하구 재임기간으로 함(안 제14조의2 제5항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제4항
- 나.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영 제81조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과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표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위원장은 과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⑥과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과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(현행과 같음) 제14조의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영 제81조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과 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 하“과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과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,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 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구소속 공무 원과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자격 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표심의위 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 ④위원장은 과표심의위원회를 대표 하며, 그 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⑥과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 ⑦과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